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중대산업재해규정의 적용대상 조정〉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9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중대산업재해규정의 적용대상 조정 .....              | 3  |
| 참고자료 1. 2024년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 실태조사 결과 ..... | 13 |
| 참고자료 2.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  | 16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의자의원 등 108인
2. 제 안 일 : 2024. 6. 17.
3. 회 부 일 : 2024. 6. 1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현행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 III. 검토의견

#### 1. 중대산업재해규정의 적용대상 조정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대금 5억원 미만의 공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② 개인사업주, ③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안 제3조),

② 및 ③에 대한 적용 제외는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인정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적용범위) <u>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u>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적용범위)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br>-----<br>-----<br>-----. |

|                           |                                                                                                                                                                                                                                             |
|---------------------------|---------------------------------------------------------------------------------------------------------------------------------------------------------------------------------------------------------------------------------------------|
| <p><u>&lt;신 설&gt;</u></p> | <p>1. <u>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u></p>                                                                                                                                                                        |
| <p><u>&lt;신 설&gt;</u></p> | <p>2. <u>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u></p> <p style="text-align: center;">&lt; 부 칙 &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p> |

## 나.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

### 1)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와 관련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또는 일정 인원 이상의 부상자·질병자를 야기한 재해를 뜻함.<sup>1)</sup>

사업주 등은 사업장 등에서 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동법 제4조 등),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 등을 부담하게 됨(동법 제6조 등).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br>가. 사망자 발생<br>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br>다.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특정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재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br>가. 사망자 발생<br>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br>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 보호대상         |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일반시민                                                                                                                                                       |
| 책임주체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br>·경영책임자등<br>-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br>-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                                                                                                              |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                                                                                |
| 처벌           | (가목)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br>(나·다목)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가목)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br>(나·다목)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 양벌규정         | (가목) 50억원 이하 벌금<br>(나·다목) 10억원 이하 벌금                                                                                                                   | (가목) 50억원 이하 벌금<br>(나·다목) 10억원 이하 벌금                                                                                                                            |
| 적용범위         |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제3조)                                                                                                                                | 제외규정 없음                                                                                                                                                         |
| 적용유예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부칙 제1조제1항 단서)                                                                           |                                                                                                                                                                 |

## 2) 중대산업재해규정의 적용대상

-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는 동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제3조), 중대산업재해규정의 적용에 있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동법이 최초 시행된 2022. 1. 27.에는 법률 제17907호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사업주와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법률 적용이 유예되었으므로,<sup>2)</sup>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영책임자등에게만 중대산업재해규정이 적용되었다가,<sup>3)</sup> 2024. 1. 27.부터 개인사업주,<sup>4)</sup>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중대산업재해규정이 적용되게 되었음.

### <대상자별 중대산업재해규정(제2장) 시행일>

| 구 분         | 상시 근로자 |              |              | 공사대금         |              |
|-------------|--------|--------------|--------------|--------------|--------------|
|             | 5명 미만  | 5명 ~ 50명     | 50명 이상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 사업주(개인사업주)* | -      | 2024. 1. 27. | 2024. 1. 27. | 2024. 1. 27. | 2024. 1. 27. |
| 경영책임자등      | -      | 2024. 1. 27. | 2022. 1. 27. | 2024. 1. 27. | 2022. 1. 27. |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동법의 '사업주'를 '개인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음.

2) 해당 부칙은 '개인사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그 의미는 '개인사업주'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됨.

3) 법률 제17907호 부칙 제1조제1항 단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었음.

4) 동법 제3조를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한정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 제3조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규정 적용대상은 안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는 지난 2024. 1. 27. 전 중대산업재해규정의 적용대상과 동일함.

다만, 개정안 제3조제1호는 중대산업재해규정의 적용 배제 사유로 현행법 및 법률 제17907호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사대금 5억원 미만의 공사를 새로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 안 부칙 제2조에 따른 안 제3조제2호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개정안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규정의 적용대상은 현행법보다는 범위가 축소되게 됨.

### <중대산업재해규정(제2장) 적용대상>

| 구 분            |                   |          | ~'24.01.26. | 현 재 | 개정안   |      |
|----------------|-------------------|----------|-------------|-----|-------|------|
|                |                   |          |             |     | 2년 이내 | 2년 후 |
| 사업주<br>(개인사업주) | 상시 근로자<br>(건설업 외) | 5명 미만    | ×           | ×   | ×     | ×    |
|                |                   | 5명 ~ 50명 | ×           | ○   | ×     | ○    |
|                |                   | 50명 이상   | ×           | ○   | ×     | ○    |
|                | 공사대금<br>(건설업)     | 5억 미만    | ×           | ○   | ×     | ×    |
|                |                   | 5억 ~ 50억 | ×           | ○   | ×     | ○    |
|                |                   | 50억 이상   | ×           | ○   | ×     | ○    |
| 경영책임자등         | 상시 근로자<br>(건설업 외) | 5명 미만    | ×           | ×   | ×     | ×    |
|                |                   | 5명 ~ 50명 | ×           | ○   | ×     | ○    |
|                |                   | 50명 이상   | ○           | ○   | ○     | ○    |
|                | 공사대금<br>(건설업)     | 5억 미만    | ×           | ○   | ×     | ×    |
|                |                   | 5억 ~ 50억 | ×           | ○   | ×     | ○    |
|                |                   | 50억 이상   | ○           | ○   | ○     | ○    |

\* 2024. 1. 27. 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적용대상

주: 1. 현행법 및 법률 제17907호 부칙 제1조제1항 단서는 공사대금 5억 미만의 공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공사대금 5억 미만의 공사도 공사대금 50억 미만의 공사에 포함됨.

2. 노란 음영은 현재와 개정안 시행 2년 후에 차이가 있는 부분임.

## 다. 검토의견

-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사업주와 50인 미만 사업장 등은 현행법의 제정 당시에는 법률 적용이 유예되었고, 2024년 1월 27일에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음.

이는 법률의 내용이 소규모 사업에 과도한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인데,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도 개인사업주와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는 개인사업주와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유예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sup>5)</sup>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sup>6)</sup> 유예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개인사업주와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하여 법률 적용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 상당수가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음.

---

5)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24277호(2023. 9. 7.)

6) “경제 5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서울경제 (2024. 1. 23.)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공동성명”, 이데일리 (2024. 1. 3.) 등.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4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공사대금 50억 미만인 기업 46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준수(적용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이 조사 대상의 77%였고,<sup>7)</sup> 중대재해처벌법의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86%였음(참고자료 1. 2024년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 실태조사 결과).

- 반면, 추가적인 적용 배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이미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는 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비중이 높아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2024년 3월에 발표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이고, 그중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54명으로 59.1%임(참고자료 2.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sup>8)</sup>

---

7)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통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됨.

- 따라서 개인사업주와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인정 여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부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확보 필요성 및 그 밖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동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법률 적용을 대비한 중소기업 등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준비상황, 개인사업주 및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고용노동부는 개인사업주와 50인 미만 사업장 등의 경우 인력·예산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법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강제할 경우 고용에의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추가 부여하고자 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277호)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부 처     | 의 견                                                                                                                                                                                                                               |
|---------|-----------------------------------------------------------------------------------------------------------------------------------------------------------------------------------------------------------------------------------|
| 법무부     | 대기업과 달리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준비가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존재하므로, 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감축 필요성,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비 여력 및 상황 등을 고려하고, 경영계·노동계·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 산업통상자원부 |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법률을 시행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폐업이 가속화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뿌리산업(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기반 사업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제조업 공급망의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므로,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
| 국가인권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 50명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정부 추진 정책과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 관한 권리의 보장 측면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와 증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
|--------------|
| 문 의 처        |
| 02-6788-5052 |

## &lt; 조사 개요 &gt;

「50인(억) 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1.27.)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억) 미만 기업 466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임.

- ☞ 이러한 결과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 ☞ 또한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재유예와 함께 법 개정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의무사항 축소를 가장 원했는데, 이는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처법이 제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 1

**응답 기업의 77%, 중처법 의무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 의무 준수 어려운 이유, 「전문인력 부재」 47%**

- 중처법 의무사항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77%가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하였으나,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해서는 미완료 기업 비율(94% → 77%)이 줄었음

\*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23.12월)

- 업종별로는 제조업(71%)보다 건설업(85%)에서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건설업) 1억 미만 84%, 20억 미만 90%, 50억 미만 54%
- (제조업) 10인 미만 69%, 20인 미만 69%, 30인 미만 83%, 50인 미만 64%

**<참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비교**

| 중처법 의무 준수(적용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다” 고 응답한 비율<br>(Q. 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느 정도 준수(준비)하고 있습니까?) |                                       |
|---------------------------------------------------------------------------------|---------------------------------------|
| '23년 11월 조사<br>( '23.11.14~22, 1,053개 기업)                                       | '24년 4월 조사<br>( '24.4.16~30, 466개 기업) |
| <b>94%</b>                                                                      | <b>77%</b>                            |

- 중처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를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는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의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순이었음

## 2

응답 기업의 **86%**, 중처법 재유에 「**필요하다**」

-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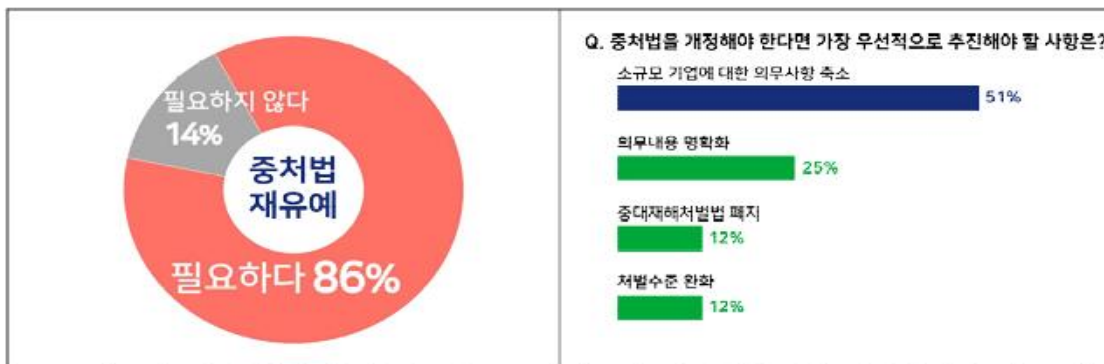
□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재유에 필요성에 대해, 응답 기업의 86%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모두 동일하게 86%로 나타남

- (건설업) 1억 미만 92.5%, 20억 미만 81%, 50억 미만 85%
- (제조업) 10인 미만 88%, 20인 미만 86%, 30인 미만 86%, 50인 미만 85%

□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는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및 '처벌수준 완화(12%)' 순이었음



〈 그림 3 〉 중처법 재유에 필요성

〈 그림 4 〉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필요 사항

## 참고자료 2

##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 ① 업종별

- 건설업 303명(297건), 제조업 170명(165건), 기타업종 125명(122건) 발생
  - 전년대비 건설업이 38명( $\Delta 11.1\%$ ), 31건( $\Delta 9.5\%$ ) 감소, 제조업은 1명( $\Delta 0.6\%$ ) 감소, 2건( $+1.2\%$ ) 증가, 기타 업종은 7명( $\Delta 5.3\%$ ) 감소, 2건( $+1.7\%$ ) 증가

| 구분             |      | 총계           | 건설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
| 사망자수<br>(명)    | '22년 | 644          | 341           | 171          | 132          |
|                | '23년 | 598          | 303           | 170          | 125          |
|                | 증감   | $\Delta 46$  | $\Delta 38$   | $\Delta 1$   | $\Delta 7$   |
|                | 증감율  | $\Delta 7.1$ | $\Delta 11.1$ | $\Delta 0.6$ | $\Delta 5.3$ |
| 사망사고<br>건수 (건) | '22년 | 611          | 328           | 163          | 120          |
|                | '23년 | 584          | 297           | 165          | 122          |
|                | 증감   | $\Delta 27$  | $\Delta 31$   | $+2$         | $+2$         |
|                | 증감율  | $\Delta 4.4$ | $\Delta 9.5$  | $+1.2$       | $+1.7$       |

### ② 규모별

- 「50인(억) 미만」에서는 354명(345건)으로 전년 388명(381건) 대비 34명( $\Delta 8.8\%$ ), 36건( $\Delta 9.4\%$ ) 감소
- 「50인(억) 이상」에서는 244명(239건)으로 전년 256명(230건) 대비 12명( $\Delta 4.7\%$ ) 감소, 9건( $+3.9\%$ ) 증가

| 구분             |      | 50인(억) 미만    | 50인(억) 이상    |
|----------------|------|--------------|--------------|
| 사망자수<br>(명)    | '22년 | 388          | 256          |
|                | '23년 | 354          | 244          |
|                | 증감   | $\Delta 34$  | $\Delta 12$  |
|                | 증감율  | $\Delta 8.8$ | $\Delta 4.7$ |
| 사망사고<br>건수 (건) | '22년 | 381          | 230          |
|                | '23년 | 345          | 239          |
|                | 증감   | $\Delta 36$  | $+9$         |
|                | 증감율  | $\Delta 9.4$ | $+3.9$       |

### ③ 유형별

- 「떨어짐」 251명(42.0%), 「끼임」 54명(9.0%) 「기타\*」 104명(17.4%)으로 전년대비 각각 17명(△6.3%), 36명(△40.0%), 26명(△20.0%) 감소

\* ▲(무너짐) 34명(△1명) ▲(화재·폭발) 30명(△14명) ▲(빠짐·익사) 6명(△10명) 등

- 반면, 「부딪힘」 79명(13.2%), 「물체에 맞음」 67명(11.2%)으로 전년대비 각각 16명(+25.4%), 18명(+36.7%) 증가

| 구분                 |      | 총계   | 떨어짐  | 끼임    | 부딪힘   | 깔림·뒤집힘 | 물체에 맞음 | 기타    |
|--------------------|------|------|------|-------|-------|--------|--------|-------|
| 사망자수<br>(명)        | '22년 | 644  | 268  | 90    | 63    | 44     | 49     | 130   |
|                    | '23년 | 598  | 251  | 54    | 79    | 43     | 67     | 104   |
|                    | 증 감  | △46  | △17  | △36   | +16   | △1     | +18    | △26   |
|                    | 증감율  | △7.1 | △6.3 | △40.0 | +25.4 | △2.3   | +36.7  | △20.0 |
| 사망사고<br>건 수<br>(건) | '22년 | 611  | 262  | 90    | 63    | 44     | 48     | 104   |
|                    | '23년 | 584  | 249  | 54    | 79    | 43     | 67     | 92    |
|                    | 증 감  | △27  | △13  | △36   | +16   | △1     | +19    | △12   |
|                    | 증감율  | △4.4 | △5.0 | △40.0 | +25.4 | △2.3   | +39.6  | △11.5 |

### ④ 업종·규모별

- 「50인(역) 미만」에서는 전년대비 건설업에서 45명(△19.9%), 46건(△20.5%) 감소, 제조업에서 14명(+17.1%), 10건(+12.2%) 증가, 기타업종은 3명(△3.8%) 감소, 0건(0.0%) 동일
- 「50인(역) 이상」에서는 전년대비 건설업은 7명(+6.1%), 15건(+14.4%) 증가, 제조업은 15명(△16.9%), 8건(△9.9%) 감소, 기타업종은 4명(7.7%) 감소, 2건(+4.4%) 증가

| 구분                 |      | 전업종  |              |              | 건설업   |              |              | 제조업  |              |              | 기타업  |              |              |
|--------------------|------|------|--------------|--------------|-------|--------------|--------------|------|--------------|--------------|------|--------------|--------------|
|                    |      | 합계   | 50인(역)<br>미만 | 50인(역)<br>이상 | 소계    | 50인(역)<br>미만 | 50인(역)<br>이상 | 소계   | 50인(역)<br>미만 | 50인(역)<br>이상 | 소계   | 50인(역)<br>미만 | 50인(역)<br>이상 |
| 사망자수<br>(명)        | '22년 | 644  | 388          | 256          | 341   | 226          | 115          | 171  | 82           | 89           | 132  | 80           | 52           |
|                    | '23년 | 598  | 354          | 244          | 303   | 181          | 122          | 170  | 96           | 74           | 125  | 77           | 48           |
|                    | 증 감  | △46  | △34          | △12          | △38   | △45          | +7           | △1   | +14          | △15          | △7   | △3           | △4           |
|                    | 증감율  | △7.1 | △8.8         | △4.7         | △11.1 | △19.9        | +6.1         | △0.6 | +17.1        | △16.9        | △5.3 | △3.8         | △7.7         |
| 사망사고<br>건 수<br>(건) | '22년 | 611  | 381          | 230          | 328   | 224          | 104          | 163  | 82           | 81           | 120  | 75           | 45           |
|                    | '23년 | 584  | 345          | 239          | 297   | 178          | 119          | 165  | 92           | 73           | 122  | 75           | 47           |
|                    | 증 감  | △27  | △36          | +9           | △31   | △46          | +15          | +2   | +10          | △8           | +2   | 0            | +2           |
|                    | 증감율  | △4.4 | △9.4         | +3.9         | △9.5  | △20.5        | +14.4        | +1.2 | +12.2        | △9.9         | +1.7 | 0.0          | +4.4         |

## 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 경기(153명), 경북(57명), 경남(48명), 충남(45명), 서울(42명), 부산(40명), 인천(40명), 전북(35명) 순으로 발생
- 전년대비 전북(+17명), 경북(+15명), 부산(+1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경기(△39명), 충남(△14명), 대구(△10명), 경남·강원(△9명) 등은 감소

| 구분          |      | 합계   | 경기    | 경북    | 경남    | 충남    | 서울    | 부산    | 인천    | 전북    | 전남   | 충북  | 강원    | 울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제주  | 세종    | 기타     |
|-------------|------|------|-------|-------|-------|-------|-------|-------|-------|-------|------|-----|-------|-------|-------|-------|-------|-----|-------|--------|
| 사망자 수 (명)   | '22년 | 644  | 192   | 42    | 57    | 59    | 38    | 30    | 35    | 18    | 36   | 28  | 34    | 18    | 21    | 14    | 12    | 7   | 2     | 1      |
|             | '23년 | 598  | 153   | 57    | 48    | 45    | 42    | 40    | 40    | 35    | 33   | 28  | 25    | 13    | 11    | 10    | 8     | 7   | 3     | 0      |
|             | 증감   | △46  | △39   | +15   | △9    | △14   | +4    | +10   | +5    | +17   | △3   | 0   | △9    | △5    | △10   | △4    | △4    | 0   | +1    | △1     |
|             | 증감율  | △7.1 | △20.3 | +35.7 | △15.8 | △23.7 | +10.5 | +33.3 | +14.3 | +94.4 | △8.3 | 0.0 | △26.5 | △27.8 | △47.6 | △28.6 | △33.3 | 0.0 | +50.0 | △100.0 |
| 사망사고 건수 (건) | '22년 | 611  | 183   | 42    | 56    | 55    | 38    | 29    | 35    | 18    | 33   | 27  | 33    | 17    | 20    | 8     | 7     | 7   | 2     | 1      |
|             | '23년 | 584  | 150   | 56    | 46    | 42    | 42    | 40    | 39    | 33    | 32   | 27  | 25    | 13    | 11    | 10    | 8     | 7   | 3     | 0      |
|             | 증감   | △27  | △33   | +14   | △10   | △13   | +4    | +11   | +4    | +15   | △1   | 0   | △8    | △4    | △9    | +2    | +1    | 0   | +1    | △1     |
|             | 증감율  | △4.4 | △18.0 | +33.3 | △17.9 | △23.6 | +10.5 | +37.9 | +11.4 | +83.3 | △3.0 | 0.0 | △24.2 | △23.5 | △50.0 | +25.0 | +14.3 | 0.0 | +50.0 | △100.0 |

## 6 기인물별

-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 및 표면」 24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154명,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70명 순으로 발생
- 전년 동기 대비 「부품, 부속물 및 재료」(△33명, △53.2%),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16명, △6.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6명, △55.2%)에서 감소

| 구분           |      |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 건설 설비·기계 |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 그 외 운송수단 |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 부품, 부속물 및 재료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기타 기인물 |
|--------------|------|---------------|----------|---------------|----------|--------------|--------------|-------------|--------|
| 사망자 수 (명)    | '22년 | 68            | 47       | 125           | 14       | 256          | 62           | 29          | 43     |
|              | '23년 | 70            | 47       | 154           | 11       | 240          | 29           | 13          | 34     |
|              | 증 감  | +2            | 0        | +29           | △3       | △16          | △33          | △16         | △9     |
|              | 증감율  | +2.9          | 0.0      | +23.2         | △21.4    | △6.3         | △53.2        | △55.2       | △20.9  |
| 사망 사고 건수 (건) | '22년 | 63            | 46       | 121           | 14       | 247          | 58           | 25          | 37     |
|              | '23년 | 65            | 47       | 153           | 11       | 233          | 28           | 13          | 34     |
|              | 증 감  | +2            | +1       | +32           | △3       | △14          | △30          | △12         | △3     |
|              | 증감율  | +3.2          | +2.2     | +26.4         | △21.4    | △5.7         | △51.7        | △48.0       | △8.1   |